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 - 102호

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우리구 잠원동 60-3 외 24필지 지상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9. 21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-3 외 24필지

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58,555.7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김학규)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12길 35, 6층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
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23. 09.14.

6. 사업시행변경내용

가. 건축규모 등 계획 변경

- 근린생활시설 건축계획 변경(지하층 바닥면적 327,56㎡증가)
- '23.4.20. 구 건축/교통 심의결과를 반영한 기부채납 운동시설 건축물 규모변경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해당 없음.

8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
가. 주택용지(아파트 및 부대·복리시설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) 대지면적 : 122,071.4㎡ | 2) 건 폐 율 : 19.04% |
| 3) 용 적 률 : 299.99% | 4) 최고높이 : 111.3m |
| 5)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 | |

나. 주구중심(근린생활시설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) 대지면적 : 4,493㎡ | 2) 건 폐 율 : 49.83% |
| 3) 용 적 률 : 238.22% | 4) 최고높이 : 26.85m |
| 5) 용 도 : 근린생활시설 등 | |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지하4층 / 지상35층, 아파트 29개동 3,307세대

공 급 구 분	주택의 형 태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 ~ 115㎡ 이하	115㎡ 초과
계	아파트	3,307	1,174	1,308	265	560
분 양	아파트	3,112	979	1,308	265	560
소형(임대)	아파트	195	195	-	-	-

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
관한 사항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종류	규모	종류	규모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도로	11,581.20㎡	도로	13,105.5㎡	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공원	612.20㎡	공원	9,162.7㎡	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		녹지	1,750㎡	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		문화시설 (건축물)	3,891.3㎡ (14,015.6㎡)	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
11. 의제 처리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관계법규

12.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2155-7345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